

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94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18. 11. 8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공공자전거 이용료 평일 1시간 무료를 유료로 전환하여 공공시설물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토록 함으로써 공공 서비스 낭비를 억제하고 다인승(연인형) 자전거 추가 운영에 따른 이용료 징수 규정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별표 2에 평일 1시간 유료화 및 다인승(연인형) 자전거 추가

3. 근거법규

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2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없음

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: 개선사항 없음

라. 입법예고: 2018. 9. 27. ~ 10. 18.(의견없음)

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939호

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2】

공공자전거 이용료(제12조제2항 관련)

종 별	기 준	이용료	비 고
다인승(연인형 · 4인승)	1시간	2,000원	초과 30분당 추가요금 500원
남성 · 여성 · 주니어 · 2인승 · 어린이용		1,000원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	
(별표 2) 공공자전거 이용료(제12조제2항 관련)				(별표 2) 공공자전거 이용료(제12조제2항 관련)				
종 별	기 준	이용료		비 고	종 별	기 준	이용료	비 고
		평 일	토·일요 일					
다인승(4인승)	1 시간	무료	2,000원	초과 30분당 추가요금 500원	다인승(연인형·4인승)	1 시간	2,000원	초과 30분당 추가요금 500원
남성·여성·주니어·2인승·어린이용			1,000원		남성·여성·주니어·2인승·어린이용		1,000원	

근 거 법 규

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제12조(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) 도로를 개설·확장·재정비 하거나 택지개발을 하거나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제5조와 제8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

관리번호	2018A울산중구044			
정책명	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			
소관부서	기관명	울산광역시 중구		
	부서명	건설과		
	담당자명	윤미운	전화번호	052-290-3823
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	2018년 9월 19일			
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(건설과)	<p>본 조례 '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'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, 성별특성, 성별균형 참여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.</p> <p>개정的主要内容은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 제12조제2항(참조) 등에 대한 내용임.</p>			
종합 검토 의견 (성별영향평가책임관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개선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개선안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의견			
	<p>'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'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, 성별특성 반영, 성별통계 구축,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</p>			
검토의견 반영계획서	해당 없음			
<p>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.</p> <p>2018년 10월 15일</p> <p>울산광역시중구성별영향평가책임관</p> <p>(담당자/연락번호 : 류지숙/052-290-4903)</p> <p>건설과장 귀하</p>				